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0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, 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 제 15,680호, '98. 2.24.)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여비의 종류에 준비금 등을 첨가하고 용어를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표기 하였음(안 제2조)
- '국내여비규정' 및 '국외여비규정'을 준용하였던 것을 동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'공무원여비규정'을 준용토록 하였음(안 제3조)

□ 개정근거

- 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 제15,680호, '98. 2. 24.)

□ 조 례 안 : 덧 붙 임

□ 참 고 사 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 붙 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덧 붙 임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숙박료"를 "숙박비"로 하고, "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구분한다."를 "이전비,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 한다."로 한다.

제3조중 "국내여비규정을, 국외여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"를 "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"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